

[첨부자료2] 진정서 요약문

- **진정인:** 김정희 외 22명(한행복 외11명의 부모들)
- **대리인:**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사건 대리인단
- **관련 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1항 및 4항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 **사실관계의 개요**

-2016. 4. 8. 종업원들의 탈북 및 입국 사실이 통일부 발표로 알려진 후,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고 접견조차 허용되지 않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를 예정하고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구금할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국정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

-대리인단은 종업원들의 가족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그러나 국정원은 대리인단의 접견을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소환통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 않음. 담당 판사 역시 종업원들의 신변과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심리를 마치고 기각함(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지난해 6월 보호결정을 받았고, 8월에 모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나와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던 국정원의 확인서와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뿐임.

-그런 가운데 탈북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지배인이 대리인단과 만나서 한 이야기, 동료 종업원들의 외신 인터뷰 등은 종업원들의 탈북 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함. 또한 통상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과정에서 1-2개월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이틀만에 입국하였다는 점,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정착지원 및 교육을 받는 것과 달리 국정원이 계속 관리하고 정착지원까지 하였다는 점 등은 종업원들의 신변과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 가입국가로서, 국가정보원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관련된 이 사안에서 자유권 규약에 따른 판단을 받을 수 있음.

• 구체적인 규약 위반의 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최장 180일간 조사를 받고 보호결정을 받으면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정착 지원 및 교육을 받게 됨.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구금기간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 점을 지적하면서 구금기간의 최소화, 변호인 접견권 허용, 신문과정에서의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을 권고한 바 있음.

▶ 제9조 제1항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의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최장 180일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면서도 조사 방법 및 절차, 이들에게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의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2) 독방수용 등의 문제점: 그동안 알려진 북한이탈주민의 사례에 의하면, 조사받는 기간동안 CCTV가 있는 독방에서 생활하고, 가족을 비롯한 외부와의 연락이 일절 금지됨. 보호와 정착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온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적 자유를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음.

3) 센터 내 조사과정의 문제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묵비권을 보장하지 않고, 구체적인 조사 혐의의 내용, 조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함.

4) 구금과정에서의 조사 및 처우의 비례성 원칙 위반의 문제점: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구금생활, 광범위한 조사(범죄혐의를 확인하는 형사적 절차와 행정조사의 성격이 혼재됨) 등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함.

▶ 제9조 제4항

1) 종업원들과 변호인단의 접견이 완전히 박탈됨.

2)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심문 당시 법원은 당사자들의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함. 구금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수용자를 통해서만 이를 확인하려고 함.

• 결론

▶ 임시조치에 대한 요구: 정부에 대한 권고(국정원의 개입 없이,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단과 종업원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할 것/ 가족들이 종업원들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 종업원들을 5개월이 넘도록 수용한 것은 자유권 규약 제9조 제1항 위반이라는 점, 국정원이 대리인단의 접견을 막은 것은 제9조 제4항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로 하여금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신구제심사를 다시 진행하고 진정인들에게 보상과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도록 권고할 것.